

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 
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

2018. 7. 1.

국 토 교 통 부  
(건설안전과)

## 1. 개정이유

-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(대통령훈령 제334호)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재검토기한 만료일('18.6.29.) 도과에 따라 재검토기한 3년 연장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385호

「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15-473호, 2015.6.30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8년 7월 1일

국토교통부장관

**「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」  
일부개정(안)**

「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1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1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334호)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부 칙**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| 개<br>정<br>안   |
|--|---|
| 제171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29일까지로 한다. | 제171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334호)에 따라 이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|